초 · 중 · 고 동물 해부실습 가이드라인

2021. 10.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1.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규정 ····· 1

서식

1.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신청서 ····· 10
2. 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신청서 ····· 13
3. 동물 해부실습 결과보고서 ····· 14
4. 심의위원 서약서 ····· 15
5. 동물 해부실습 계획 심의평가서 ····· 16
6.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서 ····· 17
7. 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승인서 ····· 18
8.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19
9.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 20

2.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표준작업서 ····· 21

1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표준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23조의2에도 불구하고「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 및 학교의 자율권 존중 차원에서 동물 해부실습을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학교에서 추진하는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조사, 실습, 교육 등의 관련 업무

② 동물 해부실습 및 해부실습용 동물의 입고·관리·실습·사후처리

③ 동물 해부실습 및 대상 동물 관련 시설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동물 해부실습과 관련된 기록, 보관 등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이 적용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②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및 장기(조직)

※ 해부실습시 심의 필요 여부

심의없이 해부실습이 가능한 경우	○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은 동물(사체 포함)
해부실습을 하기 위해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 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및 장기(조직) ※ 실습에 사용하는 파충류, 양서류, 어류는 식용이 아니라 실습용이므로 심의 대상

제4조(학교의 장의 책무) ① 학교에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심의 후 승인을 거친 경우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독립성 보장 및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심의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 보장
2.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장비·장소·비용 등의 제공
3. 심의위원회 회의에 의견을 직접 개진하거나 진행 방해 금지
4.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을 해임하거나 심의위원회 해산 금지

③ 동물 해부실습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동물의 안전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알려 필요한 자문을 얻는다. 또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즉각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알린다.

제2장 학교 내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학교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수의사 및 학부모 각 1인은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읍면단위 소재 학교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수의사 1인을 의사·약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과학 관련 교원
2.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그 밖의 교육과정 전문가
3. 학교의 소재지가 속한 시도에 거주하는 수의사, 약사 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4. 학교의 학부모

【구성 예시】
(예시1) 과학 교원 2인, 교육청 장학사1인, 학부모1인, 수의사1인
(예시2) 과학 교원 3인, 수의사1인, 학부모2인
(예시3) 과학 교원 2인, 교육청 장학사1인, 학부모1인, 약사1인, 수의사1인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은 과학관련 교원 중 1인을 간사를 두고, 간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록을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해야 한다.

※ 회의록 포함사항: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제6조(심의) ① 심의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 해부실습 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동일 실습의 경우는 재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대면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심의, 수시심의의 경우 수의사가 반드시 출석을 해야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사체(조직 포함)를 활용하는 실습의 경우 제6호는 제외한다.

1.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지 여부

(예: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원칙 준수 여부, 동물 해부실습 대체 방법 검토 등)

2. 동물 해부실습이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영향을 고려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사전 설문조사, 사전 교육 및 안내, 학부모 동의서(서식9) 취합 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도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예 : 동물 모사 인형 등을 활용한 대체 교육, 동영상 · AR 교육 등)

4. 지도 교원이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과학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는지 여부

(예 : 관련 과목 전공, 과학 관련 자격증 및 실습 여부, 교육·훈련 이수 여부 등)

5. 동물을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지 여부

(예 : 선택하는 동물 종류의 수 적정성 및 각 종별 해당 동물 수의 적정성 등)

6. 동물의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실습의 경우 실습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계획되어 있는지 여부

(예 : 해부실습용 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의사 또는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심의 제외 및 재심의) ①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관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해당 동물 해부실습의 지도 교원, 동물 해부실습 방식, 사용 동물의 종(種), 마릿수가 모두 동일한 경우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부터 2년간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해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모둠 또는 학생 수의 증감으로 인해 마릿수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마릿수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일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학생, 학부모 등의 재심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의 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재심의를 해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 ① 심의위원은 동물 해부실습 계획 심의평가서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평가하고, 심의위원회는 동물 해부실습계획 심의평가서의 심의평가결과 및 의견에 따라 의결한다. 위원은 동물 해부실습계획 심의평가서(서식5)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학교의 장에게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동물 해부실습계획 승인서(서식6, 7)를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서식8)

② 심의위원회의 동물 해부실습계획 심의 및 승인에 관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 승인·통보된 사항에 대해 학교의 장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점검 및 보고 등) ① 위원 또는 간사는 필요한 경우, 승인된 동물 해부실습계획에 따라 동물 해부실습이 수행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에는 승인된 방법에 따른 동물 해부실습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해야 하고 승인된 계획과 상이한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습에 대해서 승인 철회 또는 실습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3장 동물 해부실습

제11조(동물 해부실습계획 제출 등) ① (정기심의) 동물 해부실습계획을 신규 승인받고자 하는 교사는 연초 또는 학기 초에 동물 해부실습계획 승인신청서(서식1)를 작성하여 동물 해부실습 시작 14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수시심의) 정기심의는 1년 단위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긴급하게 시행이 필요한 경우 실습 7일 전까지 수시 심의위원회 소집이 가능하다.

③ (긴급심의) 사체의 경우, 위원장이 위원의 일부를 지명하여 최소한의 인원(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간소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심의신청 참고사항】

- (정기심의) 각 실험마다 해부실습계획 승인신청서를 작성하되, 승인은 일괄 신청
- (수시심의) 절차 및 제출 서류는 정기심의와 동일
- (긴급심의) 사체의 경우 해당
  【긴급심의 구성예시】
  (예시) 위원장1인, 위원1인, 간사1인
- (변경심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시심의로 신청
  【상황예시】
  (상황1) 교사A가 대한중학교 근무 시(2021년) 5건의 연간해부실습계획 승인 받은 후 변경사항 없이 계획대로 해부실습을 실시하고, 이듬해(2022년) 여전히 대한중학교 근무 시는 심의 대상되지 않음
  (상황2) 교사A가 다음 이듬해(2023년) 민국중학교로 전근 간 경우, 기존 심의결과를 통보 한 학교가 달라졌으므로 신규심의로 신청

제12조(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 등) 승인받은 동물 해부실습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신청서(서식2)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부실습 대상 동물의 종
2. 동물 마취제 등 약제
3. 시료채취, 투여방법, 투여장소
4. 진정, 진통, 마취 방법 등
5. 실습기간 변경 및 실습기간 연장(3개월 이내)

제13조(동물 해부실습 수행) ① 교사는 동물 해부실습계획을 승인받은 후 동물 해부실습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동물 구입, 관리, 실험, 폐사체 처리 등의 절차는 표준작업서를 참고하여 수행한다.

③ 동물 해부실습 지도교원은 동물 해부실습이 종료된 후 동물 해부실습 결과보고서(서식3)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동물 해부실습을 수행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동물실습, 동물윤리, 동물보호, 동물복지 등에 관한 연수 및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사는 동물 해부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에게 동물윤리, 생명윤리 교육을 실습 전에 실시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수당) 위원,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서약서(서식4)를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기록 보관 및 열람) ① 간사는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서식 1] <교원작성>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신청서

계획서번호:

1. 일반사항

교과목 명		**해부실습 실시 대상 학년**	
실습 제목			
실습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실습책임자 (지도교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교육이수		일자:			
동물 해부 실습교사	성명/역할		교육이수	일자:		
	성명/역할		교육이수	일자:		
	성명/역할		교육이수	일자:		
	성명/역할		교육이수	일자:		
	성명/역할		교육이수	일자:		

※ 한 학년에 해당 실습실험 교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중 1명을 실습책임자로 작성하고 그 외의 교원은 해부실습교사 작성란에 기재

실습동물	**동물종류**	☐ 어류[붕어/기타( )] ☐ 양서류[개구리/기타( )] ☐ 파충류[거북/자라/기타( )] ☐ 조류[닭/오리/기타( )] ☐ 포유류[설치류(쥐)/토끼/소/돼지/기타( )] ☐ 죽은 동물의 장기[돼지 심장/소의 눈/돼지 간/기타( )]		
	종		**나이(주령)**	( ) 주령
	개체 수		**실습 인원 (실습 인원 당 개체 수)**	
	동물구입처	*공식업체명(2차공급업체명)*	**폐기물 처리 예정일**	년 월 일
	동물 사육장소	과학실 / 기타( )		

**주령 등 파악이 힘든 경우는 생략 가능*

2. 해부 실습개요

1. 해부실습의 목표(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기술)

2. 동물 해부실습의 필요성 및 실습 수행 대상 학년의 적절성

- *관련 교육과정 및 교과내용(개요)를 포함*

3.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유무

☐ 검토하였으나, 동물 해부실습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 검토하였으나, 대체수단으로는 교육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가 어려웠다.

4. 동물 해부실습 방법 개요(필요시 별지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실습 조편성 방법[마리(개체)당 실습인원 등*
- *보정법(동물을 잡는 방법 등)*
- *마취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방법 및 투여량*
- *해부실습 방법*
  - *절개부위, 절개방법, 관찰방법, 샘플채취 등*
- *해부실습 종료 후 사체처리 방안*
- *동물 해부실습 비동의 학생에 대한 대체 교육 실시 여부 및 방안*

5. 실습동물 관리방법 및 관리환경

- 실습동물 보관장소 : 과학실 ( ) / 기타 장소( )
- 관리환경(24시간 이상 학교 내에서 실습 동물을 관리 및 사육하는 경우 작성)
  - 사료와 물 등 필수적인 영양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가? ☐ 충분히 공급 됨 ☐ 공급되지 않음
  - 관리 환경의 온도와 습도는 적절한가? ☐ 적절함 ☐ 적절하지 않음

6. 사체 처리방법

※ 사체 처리방법 (보관 장소 및 사체 처리업체명)

☐ 보관장소( ) ☐ 위탁업체명( ) ☐ 폐기물처리업체명( )

7. 동물 해부실습 참여자 윤리교육 및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방법

** 실습 전 동물보호 및 동물실험(실습) 윤리교육. 동물 해부실습 관련 준수사항 사전 교육, 안전장구 착용, 응급상황 시 대처 교육 등*

8. 동물 해부실습 비동의 학생 대상 대체 교육 방법

**동물 모사인형 대체, 동영상교육, AR교육, 관련 문헌 교육, 기타 대체 교육 등*

본 동물 해부실습 수행을 위하여,

1. 해부실습동물의 윤리적 사용과 3R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의 수행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 3R원칙 : Reduce 수를 줄이고, Replace 대체하고, Refine 고통을 줄이는 것
2.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며, 동물 해부실습 표준작업서를 숙지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 해부실습 계획 승인 기간은 1년임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할 경우 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신청서를 통해 위원회에 알리고 승인을 받겠습니다.
4. 학생이 해부실습 동물의 윤리적 관리와 복지를 위해 표준작업서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수하도록 책임·지도하겠습니다.
5. 위 사항의 이행과 함께 심의위원회 및 학교의 장의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따를 것을 서약하며 본 동물 해부실습계획 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인)

[서식 2] 〈교원작성〉

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신청서

동물 해부실습 계획서 작성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교육이수		일자:		이수번호:	

기존 승인번호		
실습 제목		
실습 변경 내용	① 해부실습 대상 동물의 종 ② 동물 마취제 등 약제 ③ 시료채취, 투여방법, 투여장소 ④ 진정, 진통, 마취 방법 등 ⑤ 실습기간 변경 및 실습기간 연장(3개월 이내) ⑥ 그 외 실험방법 등 ( )	
실습 변경 사유		
변경내역	기존	변경
실습 방법		
동물 종		
진정·진통·마취 방법		
안락사방법		
실습기간 변경/연장		
기타		

20 년 월 일

제출자 (인)

[서식 3] 〈교원작성〉

동물 해부실습 결과보고서

심의위원회 승인번호		
학교명	교사명	연락처
구 분	내 용	
실습 제목		
실습 기간		
개체 수(계획)/개체 수(사용)		
(시행시) 안락사 방법		
추진사항	*※ 기존 계획대비 추진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	

상기 동물 해부실습에 대해 결과 보고 합니다.

년 월 일

동물 해부실습 교사 (인)

※ 1개 주제 실습에 대해 2명 이상의 교원이 실습을 수행하더라도 해당 실습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1부 작성

[서식 4] <심의위원 개별작성>

심의위원 서약서

소속 및 직위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경 력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FAX	

위 본인은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위원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성명 : (인)

○○○○학교의 장 귀하

[서식 5] <심의위원 개별작성>

동물 해부실습계획 심의평가서

접 수 번 호		평 가 일 시	20 . . .
(기존 접 수 번 호)			
실습 제목			
실 습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심의 평가기준

1	동물 해부실습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적합 □ 부적합	5	실습 실시 대상 학년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2	해당 해부실습계획의 대체방안 존재 여부 □ 확인 □ 미확인	6	동물 관리 환경의 적합 여부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3	선택한 동물 종(계통)의 타당성 □ 적합 □ 부적합	7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 적합 □ 부적합 □ 해당없음
4	동물 해부실습 방법(프로토콜)의 적정성 □ 적합 □ 부적합	8	해부실습 참여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 적합 □ 부적합

평가결과 및 의견

결 과	의 견	
□ 원안 승인 □ 수정 후 승인 □ 수정 후 재심 □ 승인 거부		
	평가위원	(인)

[서식 6] <심의위원회 작성>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서

1. 계획서 제출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교육이수	일자:		이수번호:		

2. 동물 해부실습계획서

접 수 번 호	
실 습 제 목	
실 습 기 간	
사용 동물 종/개체 수 (실습인원 대비 개체 수)	

3.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승 인 일 자	
승 인 번 호	제20 - 00 호
심 의 위 원 의 견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 해부실습계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7] <심의위원회 작성>

동물 해부실습 계획 변경승인서

1. 변경계획서 제출자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휴대폰		E-mail	
교육이수	일자:		이수번호:		

2. 동물 해부실습계획서

접 수 번 호	
실 습 제 목	
실 습 기 간	
사용 동물 종 (실습인원 대비 개체 수)	

3. 변경에 대한 승인 사항

심 의 일 자	
승 인 일 자	
승 인 번 호	제20 - 00 호
심 의 위 원 의 견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 해부실습계획 변경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해부실습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서식 8] <심의위원회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결재	간 사	위원장

□ 심의개요

○ **기　　간** : 20 . . . ~ . .

○ **심사방법** : □ 대면심사(화상회의)　□ 서면심사

○ **참여위원 : 총 __인 중 __인 참여**

□ 결과요약

○ **동물 해부실습 계획 심의결과**

심의 번호	실습 과제명	심의결과			최종 결과	비고
		적	부	보완요청		

□ 의결사항

○ **동물 해부실습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기타 사항**

□ 건의사항

□ 특이사항

첨부문서　1. 동물 해부실습 계획 승인서 사본
　　2. 회의록

[서식 9]

동물 해부실습에 관한 학부모(보호자) 동의서

초·중·고의 동물 해부실습은「동물보호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학교 등에서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해부 실습이 교과과정에 근거하여 교육 목적이 있고, 동물의 존재가 학습 또는 정서적 목표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학교에서 구성한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해당 실습은 동물 해부실습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에게 승인을 받았으며, 아래의 설명대로 교내에서 동물 해부실습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 수업 목적 및 활동 :
❍ 동물의 수와 종류 :
❍ 학교에서 동물의 보관 장소 :
❍ 동물이 학교에 있는 시간 (날짜 / 시간) :

일부 학생은 동물 근처에 있을 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 콧물, 목이나 눈, 귀 또는 피부가 가려울 수 있고, 천식이 있는 경우에는 기침 또는 흉부 압박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중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게도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도 있고, 동물과 함께 교실에 들어간 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신 후, 자녀가 동물과 함께 동물 해부실습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동의에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물로 인한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학생이 동물 해부실습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자녀의 동물 해부실습 참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비 동의에 표시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녀의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대체 방식으로 진행하거나(모형, 실감형 콘텐츠 활용 등) 다른 과제로 대체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자녀가 동물 해부실습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건강 및 안전, 또는 그 외의 이유로 자녀가 동물 해부실습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학생 이름　　(서명)

학부모(보호자) 이름　　(서명)

2 초·중·고 동물 해부실습 표준작업서

'표준작업서'는 동물 해부실습을 추진하는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 동물 구입

○ (구입처)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혹은 2차 공급업체)를 통해 구입

- (공식업체) 관련 규정에 따라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실험동물 취급 업체
- (2차공급업체) 공식업체로부터 실험동물을 납품받은 업체(과학사 등)

※ 구입 증빙서류, 동물의 건강관리 성적서 등 필요시 관련 증명서류 요청 가능

□ 관리 사항

① 동물사육

- (기간) 납품부터 실습까지의 시일이 최소화되도록 실습 계획
- (장소) 과학실/준비실 등 지정된 장소 내에서만 사육
- (환경) 사료와 물을 제공하고, 동물 특성에 맞는 사육 환경 제공

※ 동물의 건강, 질병 등의 문제 발생 이외에는 지정된 동물 사육 장소에서 이동 불가

② 환경 관리

- (시설관리) 동물반입 전, 실습 종료 후 사육장소 세척·소독 실시

※ 동물 반입·반출 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해 동물 또는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 (취급관리) 교사는 동물 사육·보관 시 환경점검 등 필요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

③ 위생 관리

- 교사와 학생 등 실습 참여자 전원 마스크, 실험복 등 안전장구 착용

※ 과학실험 안전사항을 준수하고, 실험 전 학생에게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④ 응급상황 관리

- 비상구급약을 상비하고, 안전비상연락체계*를 통해 응급상황 대비 및 처리 후 보고

* 학교 안전사고 발생보고 절차에 따라 처리 및 보고

□ 해부실습 종료 후 처리

○ 사체 및 폐기물

- (폐기방법) 동물 사체, 거즈 등 해부실습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신고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거나 가까운 보건·의료 기관, 동물병원 등의 협조를 얻어 폐기

※ 부패 위험이 있는 폐기물은 당일 처리 원칙

○ 기록보관

- 동물 해부실습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년도 별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관련 기록은 3년간 보관